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 홍보 협조 요청

1.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일선에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원은 「약사법」 제68조의3에 의거하여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진료 등의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4. 이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세 사례 및 통계, 제도 소개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을 송부드리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의 저작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약품안전관리원에 귀속되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무단 전재 및 배포하거나 인용할 수 없습니다.

붙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 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수신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중외제약, 한국얀센, 대
원제약, GC녹십자, 법무법인 청음

대리 **김승환** 팀장 **송은혜** 본부장 11/23 **김혜옥**

협조자

시행 피해구제운영팀-2133 (2022. 11. 23.) 접수 ()

우 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5층 / <https://www.drugsafe.or.kr>

전화 02-2172-6796 /전송 02-2172-6802 / kimsh@drugsafe.or.kr / 공개